

 금융위원회	보도자료			• 생산적 금융 • 포용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
	보도	배포시	배포	2019.1.8.(화)

책 임 자	금융위 은행과장 전요섭(02-2100-2950)	담 당 자	박진애 사무관 (02-2100-2953)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 목 : 「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국무회의 통과

-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**10% 초과하여 보유**할 수 있는 자(한도초과 보유주주)의 **구체적인 자격 요건**을 규정
- 원칙적으로 **대주주와의 거래가 금지**되나, 인터넷전문은행의 귀책사유가 아닌 **불가피한 사유로 허용**되는 경우를 규정

1 개요

-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'19.1.17 시행 예정*
- * '18.9.20일 국회통과, '18.10.16 공포 → 공포후 3개월 후 시행
- 이와 관련하여 **한도(10%)초과 보유주주의 자격 요건**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이 '19.1.8일 국무회의 통과

2 시행령 주요 내용

가. 주식보유한도 특례가 적용되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요건

- (주요내용)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, 정보통신업(ICT) 주력그룹에 한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
- ICT 주력그룹 판단기준

$$\frac{\text{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 합계액}}{\text{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}} \geq 50\%$$

- **ICT 기업** :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**정보통신업**(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, 방송업, 공영우편업, 뉴스제공업 제외)을 영위하는 회사

나. 대주주 거래 규제의 예외

□ **(주요내용)**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으나, **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와의 거래로 된 경우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**

- 대주주에 대한 **신용공여 금지 예외**

- 기업간 합병,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

- 대주주 발행 **지분증권 취득 금지의 예외**

- **담보권 실행** 등 권리행사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

- **대물변제**에 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

- 기업간 합병,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

다. 예외적 대면영업 허용사유

□ **(주요내용)** 대면영업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례를 규정하되, 인터넷 전문은행 취지에 반하지 않게 **최소한으로 허용**

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**장애인, 65세 이상의 노인**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

- **법령, 기술상 제약** 등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거래하기 어려운 경우*

- * ① **휴대폰분실, 고장** 등의 사유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
- ② **보이스피싱 사기 우려**가 의심되어 보이스피싱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계좌에서 출금, 자동이체 등을 하고 싶은 경우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